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218
----------	------

제출년월일 2003. 2. 13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정책 집행의 감시·통제 기능을 행하며, 의회가 집행부의 장래 정책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의사를 제시함으로써, 이에 집행부가 부응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입법이나 예산 심의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수집하며, 아울러 시민의 행정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있으나
- 종전의 시정질문 방식이 토론 방식이 아닌 일괄질문 일괄답변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방향성의 발언이 많고 효율성 저하로
- 시정질문 방법을 일문일답 등의 현실성에 맞게 성남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집행부가 전문성 갖고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어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변화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일문일답의 방식을 취하고자 함(안 제 66조의2 제2항)
- 시정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
(안 제 66조의 2 제3항)
- 보충 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66조의 2 제 5항)

성남시의회규칙 제 호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중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 질문을 허가 할 수 있다”를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일문일답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동조제3항중 “없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을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를 “없으며,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한다.

동조제5항을 “보충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66조의2(집행부에 대한 질문)① (생략) ②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③시정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6조의2(집행부에 대한 질문)①(현행과 같음) ②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을 할 수 있다. ③-----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생략) (신설)	